

 신안산대학교	산학협동연구소 규정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d style="padding: 2px;">규정번호</td><td style="padding: 2px;">3-1-3</td></tr> <tr> <td style="padding: 2px;">제정일자</td><td style="padding: 2px;">1997.03.01</td></tr> <tr> <td style="padding: 2px;">개정일자</td><td style="padding: 2px;">1997.03.01</td></tr> <tr> <td style="padding: 2px;">책임부서/팀·계</td><td style="padding: 2px;">대외협력처</td></tr> </table>	규정번호	3-1-3	제정일자	1997.03.01	개정일자	1997.03.01	책임부서/팀·계	대외협력처
규정번호	3-1-3									
제정일자	1997.03.01									
개정일자	1997.03.01									
책임부서/팀·계	대외협력처									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명칭 및 위치) 본 연구소는 신안산대학교 부설 산학협동연구소(이하 “연구소”라 한다) 라 칭한다.

제2조(목적) 본 연구소는 교육과정 개발과 경영·경제분야의 각종 문제 및 방안을 학술적으로 연구, 분석하여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 산학협동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사업) 본 연구소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 을 한다.

1. 산학협동에 의한 교육과정 개발
2. 산학협동에 필요한 조사연구 및 용역
 - 가. 지역사회 산업개발에 관한 조사연구
 - 나. 경영교육 및 사내훈련
 - 다. 산업체 위탁교육 계획 및 홍보와 운영
 - 라. 경영, 경제전반에 관한 조사연구
 - 마. 경제, 경영문제에 관한 심포지엄, 세미나 및 공개강좌 개최
 - 바. 학술지, 연구보고집 및 기타 연구간행물 발간
3. 기타 연구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및 연구활동

제 2 장 기 구

제4조(기구) 본 연구소에는 산학협동연구소장 및 연구위원 필요에 따라 연구원, 연구보조원, 조교 또는 직원을 둘 수 있다.

제5조(연구소장) 소장은 신안산대학교 전임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업무전반을 관장한다.

제6조(운영위원) 운영위원은 신안산대학교 전임교수 중에서 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제1장 제3조에 명시된 각종 사업활동 및 행사업무를 수행한다.

제 3 장 운영위원회

제7조(운영위원회) 본 연구소의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.

- ① 운영위원회는 소장과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에 따라 소장이 소집하며 소장이 운영위원장이 된다.
-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가부동수의 경우는 위원장이 결정 한다.
-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 - 1) 연구소의 기본 운영 계획
 - 2) 예산 및 결산의 심의
 - 3) 연구소 규정 및 운영세칙의 제정 및 개정
 - 4) 기타 본 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.

- 제8조(위원장과 위원)** ① 소장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.
② 연구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된다.

제 4 장 연구위원회

- 제9조(연구위원회)** ① 산업체 위탁 교육과정 개발 및 경영·경제 전반에 관한 진단분석, 지역 경제 발전에 필요한 조사활동과 기타 연구소 발전에 관한 연구 활동을 한다.
② 필요에 따라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.

- 제10조(위원장과 위원)** ① 소장은 연구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.
② 연구위원은 연구위원회의 위원이 된다.

제 5 장 재정과 회계

- 제11조(재정)** ① 본 연구소의 재정은 독립재산제로 하며 연구사업수입과 교내외의 협찬, 보조 및 연구수탁금등으로 충당한다.
② 본 연구소의 외부로부터 용역 또는 연구과제의 수행이 학교의 시설물을 이용할 때에는 총액의 20%, 그러하지 않을 때에는 규모에 따라 5~10%를 연구기금으로 적립한다.

- 제12조(회계연도)** 본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로 한다.

- 제13조(예결산 및 사업보고)** 소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다음연도 예산서와 사업 계획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,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내에 전년도 결산보고서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- 제14조(감사)** 사업내용 및 경비의 수입 및 지출은 년 1회 이상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.

부 칙

- 제1조(규칙과 세칙)** 본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과 본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규칙 및 세칙내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.
- 제2조(시행일)** 본 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